

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교사노동조합 2020 단 체 협 약 서

2021. 11. 29.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교사노동조합

전 문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대전교사노조”라 한다)는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근로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교원 노동관계 형성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 범위】

본 협약은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더불어,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 이외 관내 타 교원노동조합과 체결한 협약 내용 중, 대전교사노조와 합의한 내용보다 교사의 근로조건에 유리한 협약사항은 그 협약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최종 합의된 협약안 중 교육청 관내 교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범적 사항에 한한다.

제2조 【협약의 존중】

교육청은 본 협약사항에 대해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전교사노조와 협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

제3조 【조례·규칙의 제·개정】

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 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교사노조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 ① 교육청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교육청은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교원 전체에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하여 공문 시행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조합활동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복무관련 법령, 예규 및 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의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석
2.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 간의 정책협의회
3. 대의원과 중앙위원으로서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참석
4. 조합 집행위원으로서 집행위원회 참석

④ 교육청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월 1회, 2시간 이내의 교내·외 연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⑤ 교육청은 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교원 연수기관에서 신규임용 및 자격연수 과정을 운영할 때 대전교사노조 소개 자료를 배포한다. (신규임용 연수 과정에서는 적정 홍보 시간을 부여한다.)

⑥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의 전임자가 임기를 마치고 복귀할 시에는 원 소속교로 복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 충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생활근거지 및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⑦ 교육청은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과 직속기관이 운영하는 기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대전교사노조 홈페이지를 연결되도록 한다.

⑧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가 학교 내 게시판 설치를 희망할 경우, 학교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다만, 비방 등 비교육적인 내용은 제외한다.)

⑨ 교육청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홍보활동 등 최소한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⑩ 교육청은 교육청이 주최하는 교원의 근무조건, 후생 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전교사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⑪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 전임자 허가 신청에 따라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한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노조 활동 중 재해】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의 전임자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 관련 협의와 정책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법령 개정 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의견을 제출한다.

제6조 【대전교사노조의 의견수렴】

① 교육청은 공무원노조 등 타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단체교섭 요구안 등 관련 사항을 대전교사노동조합에 알리며, 대전교사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시에도 그린다.

② 교육청은 공무원노조 등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교사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제7조 【부당노동행위 예방】

① 교육청은 바람직한 교원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자격 연수 과정에 교원노동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노동 관련 과목의 개설·운영에 있어 사전에 대전교사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시설 편의 제공】

①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가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사무실과 최초 사무실 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집기, 사무기기 등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공 한다.

②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가 교육청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조합비 일괄공제】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지급받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대상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지정 계좌에 입금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동의한 조합원에 한하여 대전교사노조에 공제내역을 통보한다.

제10조 【통지 및 문서 발송 편의 제공】

①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노조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②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상호 통지한다.

1. 교육감이 통지할 자료

가. 교육청 및 직속 기관의 조직표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로 대체)

나. 교육통계연보 등 교육청 발간 간행물 목록 (시교육청 기록관 홈페이지 게시로 대체)

다. 각급학교 발송 공문 중 대전교사노조가 요청하는 교원단체 및 교원의 근무 여건과 관련된 공문

라. 단체협약 이행 점검결과 공문

마.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로 대체)

2. 대전교사노조가 통지할 자료

가. 규약의 변경사항

나. 대전교사노조의 임원 현황

다. 대전교사노조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③ 교육청은 대전교사노조가 교육청에 조합활동과 관련한 문서를 발송할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는 단체협약 이행점검, 대전교육정책, 교육 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① 협의는 반기별로 1회, 3시간 내로 실시하며,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교섭관련 회의로 대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측 합의에 의해 추가 개최한다.

② 정책협의회 대표는 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과장 혹은 팀장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양측의 합의에 의해 대표위원을 과장급으로 한다.)

③ 협의 안건은 상호간에 2주일 이전에 통보한다.

④ 정책협의회 결과는 상호 문서로 확인한다.

⑤ 정책협의회(교섭이 진행중일 경우 교섭 관련 회의 및 협의)시 상호발언을 기록하여 추후 확인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속기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차후 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제3장 교원의 전문성 보장

제12조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①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원의 사기 저하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하여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서술형(주관식) 문항 등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 학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③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처리 단계에서 원자료 열람요청 처리, 결과 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평가 결과 활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업무는 평가관리자인 교감이 직접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④ 교육청은 교원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제13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교육청은 2급 정교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경력 3년 이상이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이 주관하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 대한 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연수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③ 교육청은 교육청이 인정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비 부담 직무연수에 대하여 연수기관에 납부하는 연수경비 교원 1인당 지원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도록 노력하고, 출장(연수) 처리한다.

④ 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는 학교당 일률적인 인원 배정을 지양하고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단, 의무연수과정은 예외로 한다.

⑤ 교육청은 교육연수원 주관 연수프로그램 편성 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전교사노조는 수요조사 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

⑦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교사·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⑧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자율연수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보고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⑨ 교육청은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은 이후에 교사가 희망할 경우, 교과별 3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일정 기간마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⑩ 교육청은 전교직원 필수 연수 중 하나인 ‘심폐소생술 연수’의 이론 수업을 온라인 병행 가능토록 안내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실습수업이 되도록 한다.

제14조 【연구 환경 조성】

① 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과, 학년별 연구 활동 및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예산에 반영되도록 권장한다.

② 교육청은 교원이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할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이때 근무상황은 출장(연수)으로 하며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③ 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학습 연구년제가 합리적으로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교과, 학년별 연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에 교과·학년별 연구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교과·학년 협의회비를 학교 예산에 반영되도록 권장한다.
- ⑤ 교육청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따른 교원의 교육 강사 수당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의 전문성(교육경력) 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제15조 【컨설팅 장학】

컨설팅 장학은 학교의 희망에 따라 실시하며, 장학위원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한다.

제16조 【연구학교】

- ① 교육청이 자체 지정하는 연구·시범학교 공모는 학교교육계획 수립 이전(전년도 말)에 완결하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연구학교 선정심의회를 구성할 때 교원의 경우 대전교사노조에서 추천한 1인의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장 근무조건 향상 및 업무 정상화

제17조 【교원 승진 및 인사제도 개선】

교육청은 미래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원승진체계가 마련되도록 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 인사의 임용 및 승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18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 ①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각급 학교에 설치하는 단위 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② 교육청은 각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9조 【교원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교육청은 교원 인사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대전교사노조에서 추천한 위원이 1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 【전보제도】

- ①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초빙교사제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지침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점검하며 초빙교사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교원의 정기 전보 인사발령이 학사일정과 주거지 확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성희롱 및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비정기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교사가 근무성적평정점의 공개를 원한 경우 공개한다. (본인에 한함)
- ⑤ 교육청은 소속 교원 중 시도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부부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동일시도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⑥ 교육청(교육지원청)은 정기전보 대상자의 학교별·과목별 예상 인원을 내신 희망원 작성 전까지 공개한다.

제21조 【법정 교원 수 확보 및 교육 지원 강화】

- ① 교육청은 법정 교원 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사의 인원확충을 통해 1학교 1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교사 정원내에서 교사채용이 가능한 영역에 정규교사를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할 경우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제22조 【학습지도안의 자율적 작성】

교육청은 학습지도안, 초등 주간학습계획안, 일일 교육계획안을 작성하여 결재하는 것을 폐지하고, 형식과 내용 모두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이수 집계표는 수기 작성하지 않는다. 또한 연간 지도계획은 교과, 학년 협의회를 통해 자체 수립한다.

제23조 【학교 업무 정상화】

- ① 교육청은 교사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담임교사는 수업 및 생활지도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법정 장부 이외의 기타 장부는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도록

하고, 기타 장부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적으로 필요한 장부에 한하여 비치하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몰, 계속 추진, 확대, 신규 사업 추진 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학원 운영 시간을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한다.

⑤ 교육청은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공문 생산을 억제하도록 지도하고, 학교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공문에 표시하도록 하며, 보고를 요하는 공문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를 두고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교육청은 국회·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 시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급적 이미 구축된 교육통계자료를 활용한다.

제24조 【학교 업무 정상화 2】

① 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전보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강사, 외부인력 계약 및 회계 관련 업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교육청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위탁운영자 1차 제안서심사 지원으로 계약 업무가 간소화되도록 한다.

2. 교육청은 강사, 외부인력을 활용한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사업 추진 시 계약 및 회계 관련 업무지원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3. 교육청은 학교장이 학교여건을 고려하고 소속 교직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관련 업무분장을 실시하되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관리자 대상 각종 회의 및 연수 시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③ 교육청은 학교의 정보화 물품의 구입, 무선망 구축·유지관리, 유선망 개선 사업의 계약·유지관리를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무 추진시 개별학교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한다.

제25조 【학교 업무 정상화 3】

① 교육청은 각종 외부행사에 교원, 학생, 학부모 동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자생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청은 학교장이 위임전결규정을 정비하여 결재과정을 간소화하도록 안내한다.

④ 학교 교육계획서와 교육과정계획서를 학교 특색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교육청은 학교장이 방학 중이나 토요일(재량휴업일 등)에 학교 운영상 근무가 필요한 경우 소속 교원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여 근무일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⑥ 수기로 작성하는 근무상황카드(출근보조부) 또는 출퇴근 시간 기록부는 폐지한다.

⑦ 교육청은 청소년단체에 대한 업무를 희망하는 교사에 한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업무를 지역대로 이관하도록 노력한다.

⑧ 교육청은 청소년단체 업무 가산점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도록 노력한다.

⑨ 교육청은 복수담임제도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복수담임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교원 의사를 반영하여 담임 업무 분장을 정하도록 안내한다.

⑩ 개인 봉사활동계획서 사전 승인은 봉사활동의 의미를 구현하는 교육적 차원의 지도 목적으로 운영되며, 교원 업무경감을 위하여 학교 사무 전결 규정을 담임 전결로 개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⑪ 학생 상담기록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활용하고 따로 결재하지 않는다.

제26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① 교육청은 각급학교의 결재권자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의 복무를 승인하고, 사전 대면보고를 지양하도록 안내한다.

② 새학년 학교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준비 기간 복무처리에서 휴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출근을 금지한다. 또한 휴직자가 출근할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③ 교육청은 교사(유·초·중등·특수·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의 계약제 교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연가·병가·연수 등의 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④ 교육청은 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1월 이상 결원 발생 시에는 계약제 교원 인력풀을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⑤ 교육청은 부득이 해당 학교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적정액의 보결수업수당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회계 편성 및 집행 지침에 의거 단위학교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⑥ 교육청은 교원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교사가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⑦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⑧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7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 ① 교육청은 직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 ② 공문 등 공적 문서 작성 시, 각 직종별 명칭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에 안내한다.

제5장 교육여건 및 교육 활동 지원

제28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청은 일부 과밀학급의 학습여건 개선과 함께 대규모 학교의 학습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9조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 ①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사서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창의적인 학교 도서관 운영을 위해 매년 학교도서관 및 독서 관련 직무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환기·채광·조명·온습도 조절을 위한 시설·설비 가이드(권장안)를 마련하고, 단위학교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④ 각 단위학교의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
- ⑤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이 없는 학교의 경우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서관 담당 교사에 대한 업무경감이 이루어지도록 학교에 안내한다.
- ⑥ 교육청은 국가전자도서관 원문정보를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0조 【교수·학습과정】

- ① 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한다.
- ② 교육청은 ‘대전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 (급별위원회 포함)를 구성할때 대전 교사노조에서 추천하는 위원 1~2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교육청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교과목간 교원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수전공,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과원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과원교사 발생 시 복수(부)전공연수, 과목변경 등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⑤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 학교는 정규수업을 마치고 훈련에 임하도록 한다.
- ⑥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31조 【교구 및 교과서 선정】

교구 및 교과서 선정은 교과협의회 추천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제32조 【학급운영비】

학급예산 중 학급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집행·편성되도록 지도하고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민주적인 학교 운영】

- ① 교육청은 단위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직원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상정 등이 법적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제34조 【방과후학교】

- ①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교사가 실시하도록 하며,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형태의 교과 보충수업, 선행교육 및 성적에 따른 일부 학생에 대한 예산지원 등 비교육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②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실시한다.
- ③ 교육청은 초·중학교의 경우 경시대회와 특목고 진학, 각종 시험을 목적으로 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학습 및 경시대회를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④ 교육청은 지자체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사회 돌봄기관 활성화를 위해 학교 행사 시 홍보하도록 안내하며,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업무가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⑤ 교육청은 단위학교 교원의 돌봄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교육청은 돌봄인력풀을 확대하여 구성·운영하도록 노력한다.
 2. 다양한 사유에 의해 돌봄전담사 대체인력 확보시간이 부족한 경우 확보기간(3일 이내)에 학부모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3. 초등돌봄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위탁운영자 1차 제안서 심사를 지원한다.
 4. 기 채용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위탁운영자를 돌봄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 위탁운영자로 활용 시 계약서만 별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⑥ 교육청은 방학(토요일 등) 중 방과후학교 관리를 학교장이 학교 여건을 고려하고 소속 교직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35조 【자율학습 등】

- ① 교육청은 자율학습 운영과 관련하여 경비를 징수하거나 불법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중·고등학교의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초과근무한 교사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36조 【감사제도】

- ① 교육청은 학교 감사 시 교원의 교무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는 가급적 교육 전문직이 담당하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안내한다.

제37조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제회의 이사회 및 제5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전교사노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8조 【교육예산 편성 운영의 합리화】

- ① 교육청은 학교예산 편성 시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직원의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예산 및 결산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 학교 실정에 맞는 공개 방법으로 교직원, 학부모에게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 공개한다.

제39조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 ① 공립유치원의 교원 정원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초등학교 신설 시 유치원을 병설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유치원 교사가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의 행정업무 경감과 업무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초등학교 청소인력 기준 책정 시 병설유치원의 공용사용공간을 청소 범위에 포함하도록 안내한다.
- ⑤ 교육청은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⑥ 교육청은 유치원평가위원회에 대전교사노조에서 추천한 유치원교사 1인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⑦ 교육청은 유치원의 유아학비 업무 중 분기별 청구 및 정산의 업무와 무상급식비 교부에 따른 업무에 대해 원장이 유치원여건을 고려하고 소속 교직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관련 업무분장을 실시하도록 하되,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관리자 대상 각종 회의 및 연수 시 홍보하고, 유아학비시스템 불편사항 개선 건의 등 청구·정산 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⑧ 교육청은 방과후과정 특성화강사 채용절차 등을 현장에 안내하여 유치원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도록 노력한다.
- ⑨ 교육청은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의 영양, 보건교사가 유치원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제40조 【보건교육 활성화】

- ① 교육청은 학교에서 보건교육실을 설치 및 이전할 경우,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보건실 근거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② 교육청은 교외에서 주최하는 체육활동, 교육활동의 안전요원으로 지원하는 보건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③ 교육청은 초·중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보건교사 정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
- ④ 교육청은 1교 1명의 보건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⑤ 교육청은 유치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기 전까지 유치원 업무를 겸임하는 보건교사에게 겸임 수당을 지급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고, 유치원 학급수를 고려한 인사급지 조정을 위해 노력한다.
- ⑥ 교육청에 보건장학사를 배치하여 보건교육 및 감염병 예방 업무를 담당하도록 검토한다.

제41조 【영양교육 활성화】

- ①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육 및 비상시 급식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43학급 이상 급식학교의 효율적 업무관리 및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영양교사 추가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1교 1명의 영양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④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 대전교사노조에서 추천하는 영양교사 대표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 ⑤ 교육청은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 급식 작업 환경 개선과 환경친화적 급식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⑥ 교육청은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바른 식생활 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 ⑦ 교육청은 다양한 체험형 영양·식생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2조 【특수교육 정상화】

- ① 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종합대책 수립 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행동 특성으로 인한 교사의 신체·정신적 피해 발생에 대해 교사 보호조치 및 치유회복'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지원한다.
- ③ 교육청은 특수순회교사 정원을 확보하여 특수교사가 출장이나 연(병)가 및 특별휴가 등을 갈 경우 해당 학교에 특수교육 순회교사를 점진적으로 지원한다.
- ④ 교육청은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하기 위해 특수교육 관련 보호자 연수 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년 1회 이상 운영한다.
- ⑤ 교육청은 교육부 '장애학생인권보호종합대책' (2018. 12. 19.)에 따라 특수학교에 특수교사 및 상담사 자격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장애 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
- ⑥ 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생활 연령 및 수행 수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전환 교육과정을 마련하며, 진로전담교사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⑦ 교육청은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학교 및 시청각장애 특수 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지침을 안내한다.
- ⑧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체험학습(수영실기 교육, 수련활동 등) 시 자원봉사자 등 인력풀을 구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43조 【전문상담교사의 근무 조건 향상】

- ① 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상담 내실화를 위하여 상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Wee센터에 상담장학사 배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배치한다.

제44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① 학교운영위원회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수업 지원을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인정 도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초, 중등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자율연수, 연구년제를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5조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및 규제 등】

- ① 교육청은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학교에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
 1. 연 1회 이상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교육청의 공식 창구의 마련
 4. 학교장이 성희롱·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련기관 신고 및 상급기관에 보고
 5.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정기전보 신청기간 전이라도 가능한 지역으로 전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 주관 교장, 교감 등의 자격연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 관련 교육 시간을 1시간 이상 확보한다.
- ③ 교직원의 성 상담 및 고충 처리는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되, 학생이 피해자인 중대사안에 대해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한다.
- ④ 교직원의 성 상담 및 고충 처리는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되, 학교장 등 관리직 교직원이 행위자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6장 교육활동 보호

제46조 【교육활동 보호】

- ①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법률상담과 지원기구를 구성하여 교육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방지를 위해 ‘교원 안심 번호 서비스’에 대한 시범 사업 시행을 검토하고, 각 교실과 교무실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가 학교 예산 내에서 순차적으로 설치되도록 권장한다.
- ③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제48조와 ‘사립학교법’ 제60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현직 교원이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내에서 체포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7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 ①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②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 배상책임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 ③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회복 및 치유를 위한 비용 신청과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활히 신청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 ④ 교육청은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돌봄교실 특기·적성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수업시간 담당 프로그램위탁운영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돌봄전담사는 학생의 돌봄 및 보호, 안전관리, 프로그램 관리와 교실 관리를 하도록 안내한다.

제48조 【교사의 교육권 보호 및 생활지도 업무 정상화】

- ①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해당 교사가 대면을 원치 않을 경우, 대안프로그램 운영 등 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 시 건의한다.
- ②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히 침해한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입법화 되도록 노력한다.

제49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

- ① 교육청은 연1회 이상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자료 및 홍보 동영상을 보급하여 각급 학교가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학교는 연1회 이상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원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 수업방해, 정당한 교사의 지도거부 등을 행하는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규정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 교원의 보호를 우선시 하고, 교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며, 교원 이외 강사 등은 선도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활동 침해 대처방안을 매뉴얼화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 ⑤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및 치유를 위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고 이를 교육청에 보고한다.

제50조 【공익제보자의 인권보호】

- ① 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노력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민원 및 공익제보자의 신분 및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공무원 및 관련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③ 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공개에 동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등에 따라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장 교원 후생 복지

제51조 【교원의 문화 활동 지원】

- ① 정부 및 교육청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박물관, 미술관, 고궁, 왕릉 등 문화 공간 입장 시 교원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한다. 또한, 학년 초 그 혜택을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
- ② 교육청은 직영하는 문화 체육 시설을 교원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 관련 조례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제52조 【교원의 후생 복지】

- ①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남·여 휴게실을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단위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휴게실 설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장한다.
- ② 교육청은 탈의실과 샤워실 설치를 위해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는 설계에 반영하고 기설학교는 여유 공간 확보 시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문화행사, 체력단련 등 교원복지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④ 교육청은 체육(초등체육전담교사 포함) 및 실습담당 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학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53조 【출산휴가 등 모자보호】

- ① 교육청은 여교원의 권리와 모자보호를 위하여 출산휴가, 육아시간을 신청할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여교사의 출산휴가를 조산·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허가하도록 안내한다.
- ③ 교육청은 여교원이 매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전휴가(무급)를 얻을 수 있으며,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④ 교육청은 자녀 출산 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남교원의 특별휴가 10일(1회에 한해 분할사용 가능)을 보장하도록 한다.
- ⑤ 교육청은 출산한 여 교원을 위해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유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⑥ 교육청은 교사가 육아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⑦ 교육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포함)후 1년 미만의 여교사에 대해서는 근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⑧ 교육청은 육아 휴직 교원이 복직하는 경우 원직교 복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 충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생활근거지 및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54조 【출장 여비와 연구비】

- ① 교육청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단위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며, 출장 중에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면 공무원 수당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② 교원이 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전비와 국내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 ③ 교원연구비의 경우 유·초·중등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8장 교육환경 및 학생복지

제55조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 ① 교육청은 교실의 실내 측정 온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 내 각 실의 공기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도하며, 공기청정기 등 적절한 시설 또는 장비가 설치되도록 한다.
- ③ 교육청은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건축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건축자재를 환경친화적 소재로 교체하며, 학교 신·개축 시 새집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④ 교육청은 각급 학교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이 비치되도록 지도하고, 화장실 청소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단기간의 청소에 대하여 단위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외부업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⑤ 교육청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초등학교 아동들이 청소하기 어려운 계단 등 시설물 청소 및 학년 말 교실이동 청소에 대해 단위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외부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⑥ 교육청은 외부인 출입 통제외 내실화를 통해 학생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생보호 인력 지원의 다각적인 방안 강구에 노력한다.

제56조 【학생복지】

-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 매점의 투명한 운영과 위생적 관리, 질 좋은 상품이 유지되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 ③ 교육청은 학교상담실을 점검하고 개선되도록 안내하여 학교상담실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담실이 미구축된 학교에는 상담실이 설치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GMO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 급식 기본계획에 권장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 ⑤ 교육청은 급식 시설 현대화(오븐기, 냉·난방 시스템 등)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57조 【학생자치】

-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제·개정, 운영할 때 학생 인권이 보장 되도록 안내한다.
-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집행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학생 자치 활동 공간(학생회의실 등)이 확보되도록 지원한다.

제58조 【장애인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 ①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의 처우 개선 및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계획, 전보 등 주요 정책수립 시 장애인 교원의 참여와 교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업무지원인력을 지원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인력의 원활한 직무 역할 수행을 위해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인력에 대한 연수 및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다.
- ④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에 대하여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임용·전보하도록 노력한다.
- ⑤ 교육청은 근무성적 평정 등 교원정책 추진 시 장애인 교원이 장애로 인하여 불공정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안내한다.

부 칙

제1조 【유효기간】

-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 【협약갱신】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중에 어느 일방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 쌍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나 법령의 개정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공동해설서 작성】

교육청은 단체협약 공동해설서 초안을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작성한 뒤, 대전교사노조와 의견 조율을 거쳐 유·초·중·고등학교(사립유치원 제외)에 배포한다.

제5조 【이행방법】

- ①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는 필요시 양측의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의 항목별 이행 추진계획 및 결과를 정책협의회에서 점검할 수 있다.
- ② 대전교사노조에서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확인하고, 이행상황 결과에 따라 미이행 학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연 1회 이행상황을 파악하여 대전교사노조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④ 교육청은 본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 공문 시행 등의 방법으로 학교장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에게 안내한다.
- 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및 노동관계 법규 등에 따른다.

제6조 【협약의 보관】

본 단체협약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2021. 11. 29.

대전광역시교육감 대전교사노동조합위원장
설 동 호 _____ 이 윤 경 _____